

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항만) 결정(변경)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· 지형도면 고시

지방어항인 하효항 · 사계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항만)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.

2025. 7. 16.

서 귀 포 시 장

□ 하효항 도시관리계획 (도시계획시설 : 항만, 세부시설 조성계획)
결정(변경) 사항

1. 도시계획시설(항만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시계획시설(항만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
					기정	증감	변경후	
변경	1-2	하효항	국가어항 → 지방어항	서귀포시 하효동	361,100	-	361,100	제고 제2002-8호 (2002.4.24)

나. 항만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-2	하효항	· 시설의 종류 변경 - 국가어항 → 지방어항	· 지방어항 지정(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-216호)에 따라 시설의 종류 변경

2. 도시관리계획 (항만)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

가.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세부내용	위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	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
합계				-	25,068	25,068			
기본시설		소계		-	11,780	11,780			
신설	1	기본 시설	외곽시설	공유수면	-	5,524	5,524		
신설	2		계류시설	공유수면	-	6,256	6,256		
기능시설		소 계		-	7,185	7,185			
신설	3	기능 시설	수송시설	공유수면	-	3,817	3,817		
신설	4		어선어구보전 시설	공유수면	-	3,079	3,079		
신설	5		보급시설	공유수면	-	289	289		
어항편익시설		소 계		-	6,103	6,103			
신설	6	어항 편익 시설	복지시설	공유수면	-	688	688		
신설	7		환경정비시설	공유수면	-	4,351	4,351		
신설	8		관광객 이용시설	공유수면	-	1,064	1,064		

나. 건축물에 관한 사항

1) 어항편익시설

도면 번호	세부내용	계획내용		
6	복지시설	용도	허용용도	•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 5호 다. 어항편익시설 1) 진료시설·복지회관·체육시설 등 복지시설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축면적		• 300㎡ 이하
		건축연면적		• 500㎡ 이하
		높이		• 15m 이하
8	관광객 이용시설	용도	허용용도	•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 5호 다. 어항편익시설 5) 지역특산품 판매점, 생선횃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축면적		• 300㎡ 이하
		건축연면적		• 300㎡ 이하
		높이		• 8m 이하

□ 사계항 도시관리계획 (도시계획시설 : 항만, 세부시설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
1. 도시계획시설 (항만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
					기정	증감	변경후	
변경	5-2	사계항	지방 어항	안덕면 사계리	61,532	증) 4,596	66,128	제고 제2010-25호 (2010.3.8)

2. 항만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-2	사계항	· 면적변경 - 61,532㎡ → 66,128㎡ [증 4,596㎡]	·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(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-24호)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면적 변경

2. 도시계획시설 (항만)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

가.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세부 내용	위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	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
합계				-	19,359	19,359			
기본시설		소계		-	11,286	11,286			
신설	1	기본 시설	외곽시설	사계리 2147-39	-	3,410	3,410		
신설	2		계류시설	사계리 2147-32	-	7,876	7,876		
기능시설		소 계		-	2,981	2,981			
신설	3	기능 시설	수송시설	사계리 2147-32	-	2,531	2,531		
신설	4		보급시설	공유수면	-	318	318		
신설	5		수산물유통·판매 보관시설	사계리 2147-32	-	132	132		
어항편익시설		소 계		-	5,092	5,092			
신설	6	어항 편익 시설	복지시설	사계리 2147-30	-	1,088	1,088		
신설	7		환경정비 시설	사계리 2147-32	-	2,359	2,359		
신설	8		레저용 기반시설		-	686	686		
신설	9		관광객 이용시설		-	959	959		

나. 건축물에 관한 사항

1) 기능시설

도면 번호	세부내용	계획내용		
5	수산물 유통판매 보관시설	용도	허용용도	•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 5호 나. 기능시설 5) 수산물의 유통·판매·보관시설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축면적		• 200㎡ 이하
		건축연면적		• 200㎡ 이하
		높이		• 4m 이하

2) 어항편익시설

도면 번호	세부내용	계획내용		
6	복지시설	용도	허용용도	•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 5호 다. 어항편익시설 1) 진료시설·복지회관·체육시설 등 복지시설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축면적		• 400㎡ 이하
		건축연면적		• 500㎡ 이하
		높이		• 10m 이하
9	관광객 이용시설	용도	허용용도	•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 5호 다. 어항편익시설 5) 지역특산물 판매점, 생선횃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축면적		• 600㎡ 이하
		건축연면적		• 600㎡ 이하
		높이		• 10m 이하

3. 지역·지구 등 도면 및 효력

- 지형도면 : 실음생략 (붙임도면 참고)
- 지역·지구 효력: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
고시일로부터 발생

4. 열람장소

- 서귀포시 도시과(☎ 064-760-2973)
- 서귀포시 해양수산과(☎ 064-760-3523)

[참고도면]

[하효항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항만) 결정도 (변경없음)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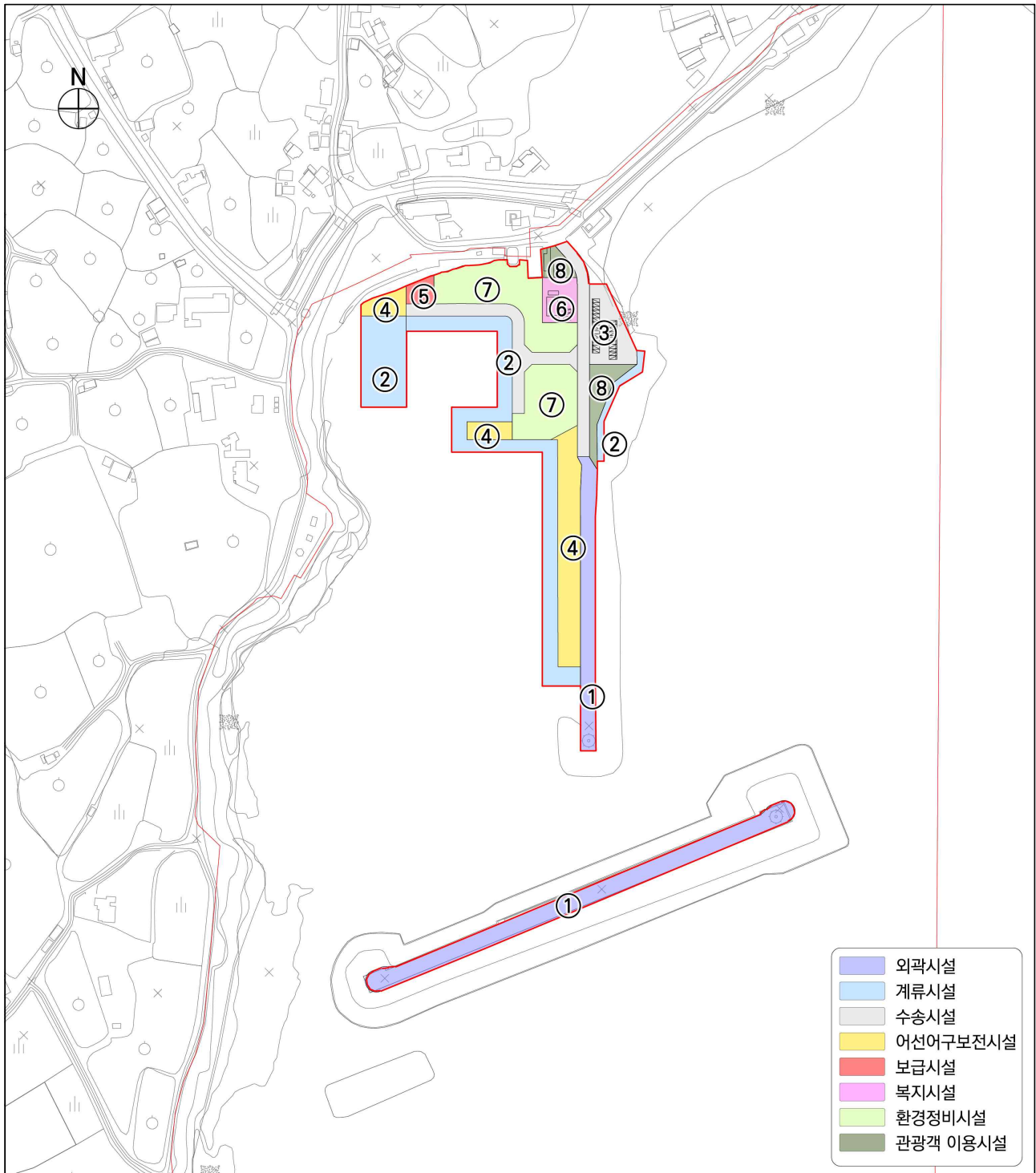
[사계항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항만) 결정도 (기정)]



[사계항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항만) 결정도 (변경)]



[하효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도]



[사계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도]

